



내용문의	최윤정 연구위원 ☎ 02-3156-7176
배포담당	황애리 언론담당 ☎ 02-3156-7296
배포일시	2026. 7. 7.(화) 오전
보도시기	배포 즉시

※ 매수 : 총 4쪽

이주민가족 증가하지만,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 기반은 부재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주민가족 현황 및 정책 대응 방안 연구」 통해 이주민가족 지원 정책 제시

이주민가족 보육·교육·체류·서비스 지원 포괄하는 정책 전환 필요
외국인가정 자녀 2020년 24,453명 → 2024년 47,010명, 4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

<연구 소개>

국내 거주 이주민가족의 생활 양태 및 지원 요구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주민가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사회보장 대상 확대, 체류자격 개선 방안, 다문화 가족 용어 개선 등을 제안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종숙)은 「이주민가족 현황 및 정책 대응 방안 연구」(책임 연구자: 최윤정 연구위원)를 통해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 본 연구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가족 동반 증가와 장기체류 확대 흐름 속에서, 기존 다문화가족 정책으로 포괄되지 않는 이주민가족의 생활 실태와 정책 요구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 외에도 다양한 이주 경로와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민가족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내용의 주요 출처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음.
최윤정·김이선·장윤선·김수진·장주영(2025). 「이주민가족 현황 및 정책 대응 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주민가족: 이주 경험이 있는 구성원이 포함된 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과 한국인의 결합 가족

- 장기체류 외국인(등록+거소)은 2019년 약 173만 명에서 2023년 188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특히 외국국적 미성년자는 12만 명 인원에 이르고, 이주배경학생 중 외국인가정 자녀는 2020년 24,453명에서 2024년 47,01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 장기체류 외국인 중 43.2%가 한국에서 가족과 동거하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외국인 중 64.1% 또한 자녀와 국내 동거 중으로 나타났다. 장기 체류 외국인의 한국에서의 동거가족 수는 평균 2.1명이다.
- 양적,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살펴본 결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가족 동반 경로와 가능성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가족 동반으로 주거비, 보육비, 교육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녀 교육비에 대해서는 48.2%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자녀 이주민가족은 무상보육 제도가 한국 국적 아동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보육비를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보육·돌봄을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지원방식 및 지원규모가 지역별로 상이함에 따라 오히려 지역별 격차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동반 배우자의 경우, 취업활동이 금지되고 한국어 능력의 부족 등으로 사회생활 자체가 고립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는 특히 이러한 구조가 여성 배우자의 사회적

고립, 경제적 의존, 돌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 이주민가족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는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가족센터는 이미 외국인가족을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용 자격과 제공 서비스 범위를 둘러싼 혼란이 존재하며, 여기에는 서비스 대상 확대에 대한 인력 및 예산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점도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앞으로는 다문화가족 중심의 정책을 넘어,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가족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책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주민가족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이주민가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
 - 단기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해 이주민가족 또는 이주민 아동·청소년을 서비스 대상으로 공식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주배경가족지원법」 제정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다문화가족’ 정책용어를 ‘이주민가족’ 또는 ‘이주배경가족’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이주민가족 지원 서비스 개발 및 확대
 - 가족센터 내 이주민가족 서비스를 확대 및 다양화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주민가족 지원 서비스의 개발과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이주민가족 사회보장 지원의 단계적 확대
 - 이주민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 확대가 점진적으로 요구되며, 특히 이주민 아동의 보육 지원 방안이 지자체 대응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중앙 차원의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 이주민가족의 체류자격 제도 개선 필요

- 그 외 동반 배우자의 취업 활동 일부 완화 검토, 비전문 인력의 가족결합권 인정에 대한 점진적 검토, 동반가능 미성년 자녀의 연령 기준 상향 조정 등을 제안하였다.

□ 최윤정 연구위원은 “외국 국적자로만 구성된 가족은 가족정책과 이민정책 양쪽에서 모두 충분히 포괄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지적하면서 “이주민가족은 한국 사회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사회구성원으로, 노동시장, 사회보장, 교육, 돌봄, 주거, 가족관계가 교차하는 중요한 사회통합 대상” 이라고 강조했다.

□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가족정책도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더 넓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며, “이제는 다문화 가족 중심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주 배경의 가족까지 포괄하는 정책 전환을 논의할 때” 라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7월 15일(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 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144차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누리집-발간자료-연구보고서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주민가족 현황 및 정책 대응 방안 연구 | 과제 책임자 : 최윤정 연구위원

<https://www.kwdi.re.kr/publications/reportView.do?s=searchAll&w=%EC%B5%9C%EC%9C%A4%EC%A0%95&p=1&idx=133646>